2020부천시도시기본계획수립에대한의견안
심 사 보 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5년 1월 6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5년 1월 6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117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(2005년 1월 13일) 상정·의결

2. 제안 설명요지

(제안 설명자 : 도시과장 오 응 완)

□ 제안사유

○ 2003년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,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법률(이하 국토계획법)로 대체되었음

○ 2000년부터 시작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의 지연으로 순연됨에 따라 도시계획 행정서비스 및 민원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공청회 등 절차를 적기에 이행하여 계획수립에 원할을 기하고자 함

○ 이상의 이유로 국토계획법 제21조(지방의회의 의견청취)의 규정에 의하여 “2020년 부천시도시기본계획”수립에 대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○ “2011년 부천시도시기본계획”의 계획인구를 98만명으로 설정하고 있으나, 1996년이후 부천시 인구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정부의 수도권기능분산정책 등을 고려하여 2020년 계획인구를 98만명으로 재설정

○ 공간구조를 2011년 3핵 3지구중심(8생활권)에서 2020년 2핵 6지구중심(8생활권)으로의 변화가 필요

○ 개발가능지와 토지수요에 입각하여 계획대상지역을 시가화용지, 시가화 예정용지, 보전용지로 구분하고 계획적인 정비·관리를 유도

○ 교통, 상하수도, 주택, 환경 등 관련부문의 개선기본방향과 시행전략을 제시

○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의 설정과 관리방안을 제시

○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립 및 이미지 강화,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도시경관형성을 통하여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관계획을 제시

□ 근거법령

○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, 제19조, 제20조, 제21조

○ 동법 시행령 제16조

3.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	답 변
○ 2020년 인구증가율을 98만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줄어들것으로 보고있음 이와 관련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보는데 ?	○ 98만명은 2011년의 인구기준을 2020년까지 활용하는 것임.
○ 경관조명 문제는 계속 주장되어 왔으나 관련규정의 제정등 기준이 없어 지금이라도 필요한 조치라고 보는데	○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근거한 경관조명 계획은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경관계획은 현재 용역중에 있어 용역결과를 의회에 보고할것임.
○ 교통계획중 경전철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기 바라며 부천시를 순환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?	○ 소사역이 환승역으로 될것으로 중, 상동 신도시를 경유하는 계획과 송내 1, 2동을 경유하는 2가지 방법을 계획에 포함하고 있음.

질 의	답 변
○ 부천의 랜드마크 계획은 우리시를 상징할수 있는 시설물이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?	○ 기존의 시설물을 활용하여 랜드마크 형성을 계획하고 있으나 특징적인 시설물 도입 계획을 포함할것임.
○ 본 용역과 관련하여 부천시에서 참여하는 공무원이 있는지 ?	○ 용역과 관련 참고할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고 전문가 집단에 전적으로 용역을 주고 있음.
○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도 포함되는지 ?	○ 포함되어 있음.
○ 우리시는 협소한 면적에 비해 인구밀도가 매우 높음. 토지 이용의 효율적 방안이 최대 과제라고 보는데 ?	○ 우리시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는 용역인 만큼 도시 발전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용역결과가 되도록 하겠음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 음

나. 반대토론 :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찬성의견 채택

6. 소수의견의 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8. 붙임서류 : 의견서 1부

2020부천도시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의견서

의안번호	제342호	안건명	2020부천도시기본계획수립에대한의견안
제 출 자	부천시장	의 결 연월일	제117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본회의(2005. 1. 18)

2020부천도시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의견

2020년 부천도시기본계획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,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므로 도시기본계획(안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.

① 계획인구를 2020년에 98만명이 될 것으로 설정 하였는바, 현재 인구밀도가 15,361인/㎢로서 과밀한 도시형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시민의 삶이 쾌적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인구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됨.

② 평면적인 토지 이용의 확산을 억제하고, 토지이용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이루도록 하여야 함.

③ 제조업의 감소와 중소기업의 이주 가속화는 부천시의 경제기반 상실의 우려가 있으므로 첨단산업의 비중을 높여 나가고 중·대형 기업체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함.

④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관리방안에서 광역도시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금번 도시기본계획에 광역도시계획에서 결정될 GB조정 가능구역의 면적이나 위치를 포함하여 정하였는바 상위계획과의 상충이 발생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함.

⑤ 오정동 일원의 물류단지 계획부지는 공익적 기능이 중심이 되도록 하고, 물류단지 입지로 인한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단계부터 넓은 안목을 가지고 개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.

⑥ 경전철 사업은 연장이 10km이하로 짧고, 소사-원시간 복선 전철 및 서울지하철 7호선의 확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및 통행 수단별 수요추정을 재조사하여 반영여부를 결정 하여야 함.

⑦ 대로 3-6호선의 도당동 미 개설구간을 기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기본계획에서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재검토가 요구됨.

⑧ 경관계획의 내용중 랜드마크적인 요소의 현상만을 제시하였으나 실현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.

⑨ 신·구시가지 주거격차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장기적인 정비 및 개발 방향,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제시하여 도시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과 기능의 조화를 전략적으로 제시하여야 함.

2005년 1월 18일

부천시의회 의장

2020부천시도시기본계획수립에대한의견안

의 안 번 호	제342호
의결 년월일	2005.1.16 (제117회)

제출년월일 2005. 1. 6.
제 안 자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○ 2003년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,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법률(이하 국토계획법)로 대체되었음

○ 2000년부터 시작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의 지연으로 순연됨에 따라 도시계획 행정서비스 및 민원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공청회 등 절차를 적기에 이행하여 계획수립에 원할을 기하고자 함

○ 이상의 이유로 국토계획법 제21조(지방의회의 의견청취)의 규정에 의하여 “2020년 부천시도시기본계획”수립에 대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○ “2011년 부천시도시기본계획”의 계획인구를 98만명으로 설정하고 있으나, 1996년이후 부천시 인구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정부의 수도권기능분산정책 등을 고려하여 2020년 계획인구를 98만명으로 재설정

○ 공간구조를 2011년 3핵 3지구중심(8생활권)에서 2020년 2핵 6지구중심(8생활권)으로의 변화가 필요

○ 개발가능지와 토지수요에 입각하여 계획대상지역을 시가화용지, 시가화예정용지, 보전용지로 구분하고 계획적인 정비·관리를 유도

○ 교통, 상하수도, 주택, 환경 등 관련부문의 개선기본방향과 시행전략을 제시

○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의 설정과 관리방안을 제시

○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립 및 이미지 강화,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도시경관형성을 통하여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관계획을 제시

□ 관련근거

○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, 제19조, 제20조, 제21조

○ 동법 시행령 제16조

2020부천시도시기본계획수립안

□ 개　요

○ 근　거 :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
○ 계획범위 : 53.45㎢
○ 계획인구 : 980,000인 (2020년)
○ 계획기간 : 2003년 ~ 2020년

□ 계획수립의 주안점

○ 계획수립의 주안점
- 도시공간의 양적 수요 충족에서 질적 제고강화
-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성장관리정책의 시행
- 새로운 국토계획 체계의 적용
- 도시문제에 대한 광역적 대처와 네트워크적인 정비
- 부문별 계획내용의 지역별 구체화

□ 계획인구의 설정

○ 2011년 부천시 도시기본계획 인구 : 98만명
○ 2020년 부천시 도시기본계획(안) 인구 : 인구의 과거추세, 자연적 증가, 사회적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20년 계획인구를 98만명으로 설정

<표 1> 단계별 계획인구

구분	2002년	2005년	2010년	2015년	2020년
단계별 계획인구(명)	816,499	846,000	896,000	947,000	980,000

□ 공간구조의 구상

○ 1개 외곽녹지축, 4개 녹지거점구축, 4×4 간선교통축 설정

○ 부천역, 중·상동중심의 2핵 6지구중심체계 구성

- 도심 : 부천역, 중·상동

○ 8개 중생활권 35개 소생활권

- 역곡, 소사, 심곡, 송내, 중동, 상동, 도당, 원종 중생활권

<표 2> 생활권별 인구배분

구분	역곡	소사	심곡	송내	중동	상동	도당	원종	계
면적(㎢)	7.84	3.60	4.80	4.20	4.40	3.70	13.46	11.45	53.45
2020년 인구(인)	106,000	83,000	150,000	116,000	158,000	85,000	105,000	177,000	980,000

□ 토지이용 계획

○ 토지용도별 입지배분계획

<표 3> 용도별토지이용계획

(단위: ㎢, %)

구 분		기 정		변 경		변경면적
		면적	구성비	면적	구성비	
계		53.45	100.0	53.45	100.0	-
시가화용지		29.42	55.0	30.254	56.6	2.581
	주거용지	22.36	41.8	23.157	43.3	0.797
	상업용지	3.10	5.8	3.100	5.8	-
	공업용지	3.96	7.4	3.997	7.5	0.037
	관리용지	-	-	-	-	-
시가화예정용지		-	-	1.747	3.3	1.747
보전용지		24.03	45.0	21.449	40.1	△2.749

○ 용도지역 변경 내용

<표 4> 용도별 변경사항

구분	입지배분				입지배분내용
	위 치	용도변경		면적 (㎢)	
		기정	변경		
①	오정구 신흥동 일원	보전용지	공업용지	0.037	▪ 도축장 확장을 위한 용도 변경
②	오정구 오정동 일원	보전용지	시가화예정용지	0.210	▪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(지역현안사업:물류지원시설 확충)
③	오정구 오정동 일원	보전용지	시가화예정용지	0.137	▪ 개발제한조정가능지역(일반조정지역;물류지원시설 확충)
④	오정구 오정동 일원	보전용지	시가화예정용지	0.058	▪ 지역현안사업(물류지원시설 확충)
⑤	오정구 여월동 일원	보전용지	주거용지	0.672	▪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(국책사업;여월택지개발사업)
⑥	소사구 범박동 일원	보전용지	시가화예정용지	0.466	▪ 개발제한조정가능지역(일반조정지역)
⑦	오정구 오정동 일원	보전용지	시가화예정용지	0.303	▪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(집단취락;대장취락)
⑧	오정구 성곡동 일원	보전용지	주거용지	0.034	▪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(집단취락;서태말취락)
⑨	오정구 성곡동 일원	보전용지	시가화예정용지	0.059	▪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(집단취락;성골취락)
⑩	오정구 성곡동 일원	보전용지	주거용지	0.020	▪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(집단취락;안골취락)
⑪	원미구 춘의동 일원	보전용지	시가화예정용지	0.035	▪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(집단취락;당아래취락)
⑫	오정구 성곡동 일원	보전용지	주거용지	0.038	▪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(집단취락;여울취락)
⑬	오정구 성곡동 일원	보전용지	시가화예정용지	0.230	▪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(집단취락;이주단지)
⑭	오정구 성곡동 일원	보전용지	시가화예정용지	0.073	▪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(집단취락;까치울취락)
⑮	소사구 역곡1동 일원	보전용지	시가화예정용지	0.172	▪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(집단취락;역곡취락)
⑯	소사구 범박동 일원	보전용지	주거용지	0.033	▪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(집단취락;함박이취락)
⑰	소사구 범박동 일원	보전용지	시가화예정용지	0.004	▪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(집단취락;계수취락)

□ 교통계획

○ 간선도로망 계획

- 서울～인천간 접근성・이동성 확보를 위해 장래 상위계획과 기존계획 등을 검토하여 광역도로망 정비방안 수립
- 기존 부평축중 한다리길 확장을 통해여 김포방향 이동성 강화. 방화동방향 이동성 확보를 위해 기존 수주로를 이용한 고강～방화간 도로 개설과 국도6호선 및 오쇠로 확장 검토
- 시흥축 개선방안으로 계수대로와 옥길로 개설을 통한 계수・범박동 지역에서 서울과 시흥, 광명으로 이동성 부여. 경인국도의 우회지역간 도로로서의 기능 부여
- 장기적으로 경인국도 대체우회도로(1・2 단계)개설을 통하여 시내교통 혼잡완화 도모

<표 5> 주요 도로 사업별 시행계획

구분	사업명
개설	국도6호선(2단계)외 16개소
확장	한다리길외 11개소
개선	부천 I.C 등 1개소

○ 경전철망 계획

- 도시내 궤도 수송체계인 경량전철 건설
- 시흥・서울 연계로 인하여 도시내 및 남북간 광역철도교통체계 강화
- 민자유치와 국비・지방비 지원사업으로 추진

○ 도시철도

-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・건설을 통하여 시민교통편익 증진
- 경인전철의 혼잡난 해소 및 서울 강남방향 분산
- 동서간 광역철도교통체계 강화
- 국비・지방비 지원사업으로 추진

□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

○ 도심 및 시가지 정비의 기본방향
- 기존시가지내 기반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오픈스페이스 확보
- 기존 주거지의 밀도 및 용량 규제 방안마련
- 신·구시가지간 균형있는 개발과 적정기능 배분
- 역세권 활성화 및 신·구도시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도심활성화

○ 주택 및 주거환경계획 기본방향
- 주거생활안정화를 통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
- 신·구시가지 주거격차 해소
-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생활 안정도모

○ 주택수요전망
- 주택감실수와 주택공급 대상가구수를 고려한 주택재고수와 주택보급률은 각각 2020년에는 261천호, 100.0%에 이를 것으로 전망

○ 주택공급계획
- 주택수요추정에 따른 주택공급량은 2020년 84천호로 매년 약 5천호의 주택건설이 필요. 주택유형별로 APT 60%, 연립주택 30%, 단독주택 10%의 비율에 맞추어 배분

□ 경관계획

○ 경관관리 방향 설정
-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립 및 이미지 강화
-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도시경관형성
- 공업지역의 경관개선
- 커뮤니티 중심의 경관창출

○ 경관관리대상지역의 선정 및 관리
- 경관보전대상지역
  · 표고 75m 이상(자연녹지지역은 65m이상)의 지역. 경사도 15%이상 인 지역인 성주산, 원미산, 도당산, 할미산등의 주요산지
  · 자연녹지의 보전 및 경관보전대상지역으로의 조망을 보호하도록 신규개발사업의 높이 및 스카이라인계획 조정

- 경관개선대상지역
  · 경인고속도로, 외곽순환도로, 경인전철 주변지역
  · 도당동 공업지역, 원미산 주변의 준공업지역 및 주거지, 역곡1동의 준공업지역, 성주산주변의 준공업지역 및 주거지
  · 고층 아파트 입지 제한 및 건축물 높이 관리와 자연경관으로의 통경축 확보

○ 주요 조망점의 선정 및 관리
- 춘의산, 시립도서관, 와우고개, 하우고개

○ 경관요소별 경관형성방안
- 랜드마크 형성 및 연출계획
  · 부천역, 중앙공원, 실내체육관, 부천시청, 시민회관, 하우고개, 춘의산(팔각정), 호수공원, 종합운동장, 현충탑/시립도서관, 상동역 등을 선정
- 그외 특화거리 조성, 야간경관 연출방안, 도시색채, 옥외광고물 관리방안의 제안

○ 생활권별 경관관리방안 제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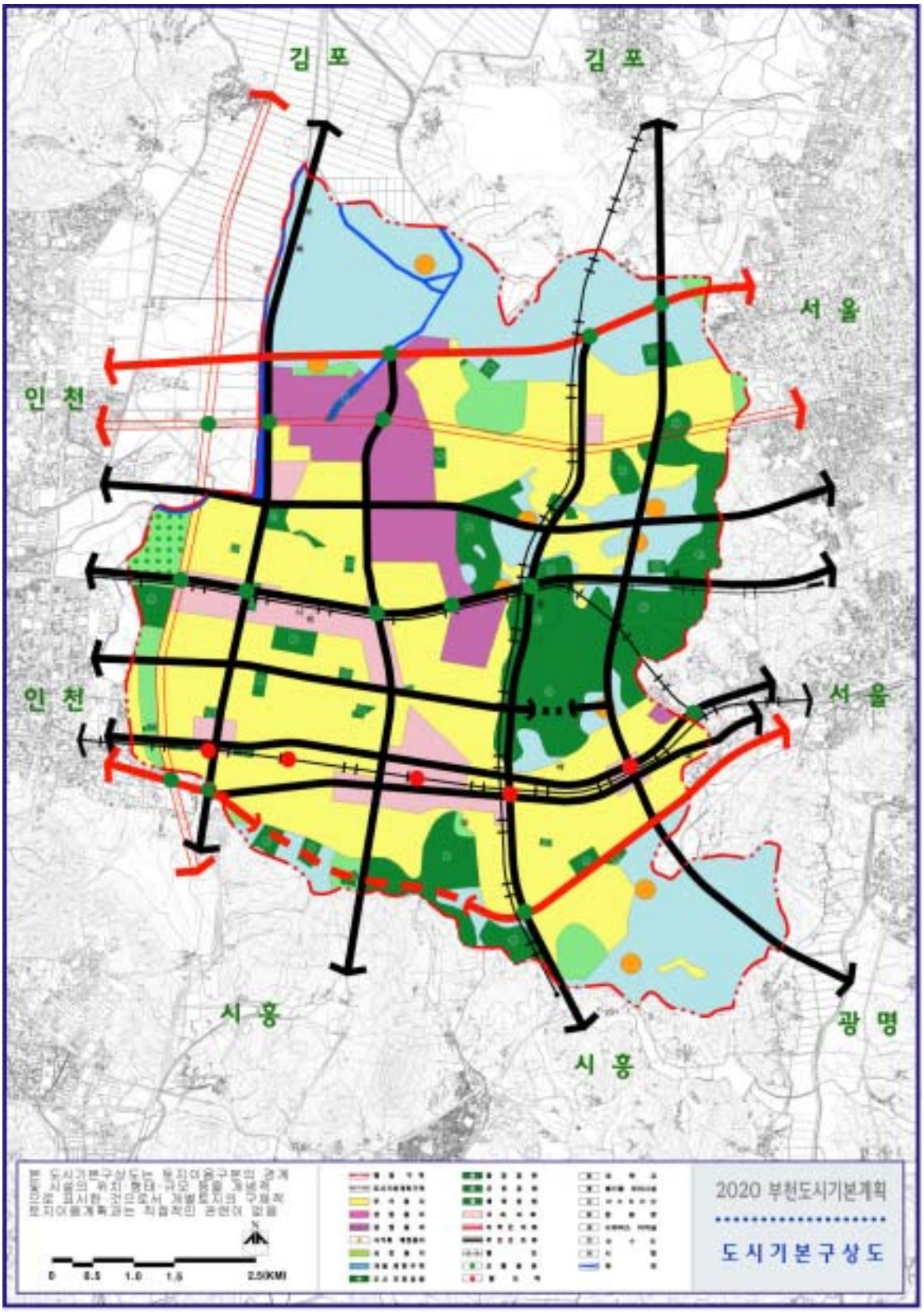

<그림 1> 도시기본구상도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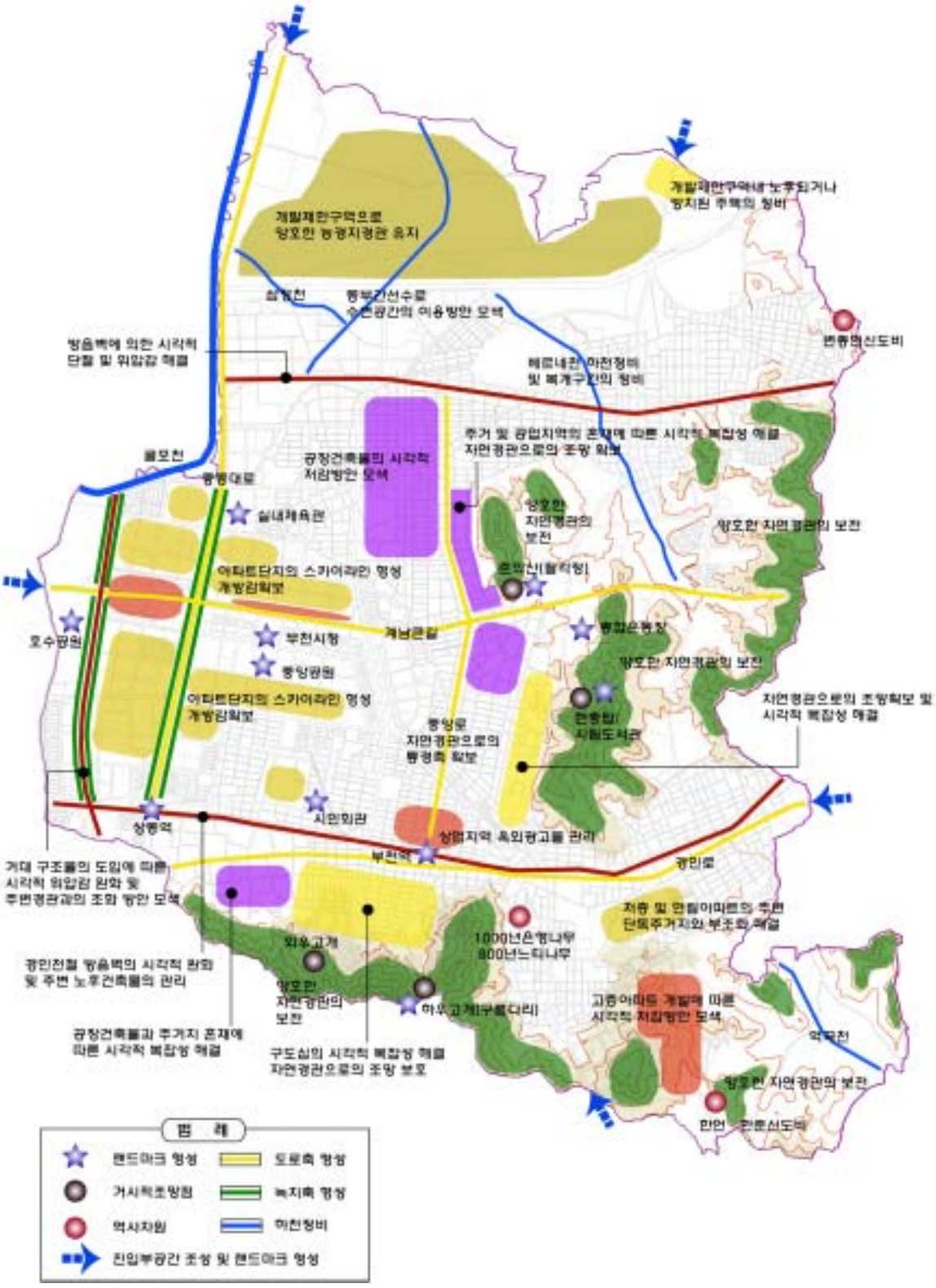

<그림 2> 경관관리 기본구상(안)